



질 병 관 리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(영문) 개정

1.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과-3766('22.7.20.)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2. 우리 청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입증서류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영문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, 관계부처에는 해외입국자 및 항공사·재외공관 등에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내용

구 분	기 준	변 경
2.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○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확진이력이 있는 내국인	○ Korean nationals entering Korea within 10 to 40 days of the date when they tested positive for COVID-19 ※ < 추가 >	○ Korean nationals entering Korea within 10 to 40 days of the date when they are tested positive* or started isolation for COVID-19 ※ Proof documents verifying the exact date of a positive test(PCR·RAT) or starting isolation is required for exemption(e.g.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, Test result report, Notice of isolation, Medical clearance, etc)

나. 시행일 : 즉시 시행

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(영문) 2부. 끝.

질 병 관 리 청 창



수신자 관계부처(기관)장, 질병대응센터장, 국립검역소장, 광역자치단체장 등

주무관 김민우 보건연구관 김동근 검역정책과장 전결 2022. 7. 25. 김주심

협조자

시행 검역정책과-3014 접수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(2022. 7. 26.)
-2008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/ http://kdca.go.kr

전화번호 043-719-9207 팩스번호 043-719-9249 / urgen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